

회계처리요강

제정	: 1992. 7. 7.
제1차 개정	: 1992.12.30.
제2차 개정	: 1994.12.30.
제3차 개정	: 1996.12.31.
제4차 개정	: 1997. 6.13.
제5차 개정	: 1997.12.31.
제6차 개정	: 1998.12.31.
제7차 개정	: 2000. 9. 8.
제8차 개정	: 2001. 7.13.
제9차 개정	: 2004. 3.18.
제10차 개정	: 2004.12.24.
제11차 개정	: 2006.12.15.
제12차 개정	: 2007.12.17.
제13차 개정	: 2008.10. 6.
제14차 개정	: 2008.12.29.
제15차 개정	: 2010. 6.18.
제16차 개정	: 2012.10.26.
제17차 개정	: 2013.10.25.
제18차 개정	: 2017.12.20.
제19차 개정	: 2018.10.26.
제20차 개정	: 2020.10.16.
제21차 개정	: 2023.1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및 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장표의 제정 및 폐기) 회계장부와 전표(이하 “장표“라 한다)의 제정 및 폐기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표의 기록 및 보존연한) ① 장표는 전산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장부를 수기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장표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처리의 병행) ① 공사의 회계처리는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회계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 충족](#) 등을 위해 [회기 중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결산시에 [회계담당 부서장](#) 주관하여 「국가회계기준」의 계정과목으로 전환한다.

제5조(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 제4조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회계기준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계정과목의 신설 및 폐기) 계정과목을 신설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팀장 및 지사장은 회계담당 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위원회 보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는 반복적인 오류발생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원미만의 단수처리) 모든 거래에 있어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금전은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의 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표 및 어음행위)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11조(현금보유 및 예치한도 등) ① 사무집행에 필요한 일상의 소액지급을 위한 현금보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② 이 요강에서 “입금모계좌”라 함은 공사의 전산시스템 및 가상계좌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가능한 제예금계좌를 의미하며, “출금모계좌”라 함은 공사의 전산시스템 및 입금모계좌와 연계되어 자금이체가 가능한 제예금계좌를 의미한다.

③ 제2항의 입금모계좌와 출금모계좌의 예치한도는 합계 2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일의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임시국외지사 등의 회계처리) 국외지사의 설치가 임시적이거나 회계단위로 따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사에 해외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요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자금관련 준수사항 및 절차 등은 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지출심사

제14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출결의의 취소, 증감) 지출결의를 득한 건이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출결의를 취소 또는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결의금액을 환입처리하거나 신규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제18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붙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의 여백에 기재(전산입력 대체가능)하고 날인한다.

④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으로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생략) ① 잘못된 기록의 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장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가.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한다.

다. 접대성경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서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의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운용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도금)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3. 공사상용의 잡비
 4. 지사, 출장소 및 사무소의 경비
 5. 업무추진비
 6. 증인, 감정인, 조사위원,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기타의 경비
 7. 보수 및 사례금(포상금을 포함한다)
 8. 기타 기준을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전도금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비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3.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상하여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 또는 본지사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 또는 본지사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전도금 취급담당자는 매월 말 현재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함께 다음달 5영업일까지 자금전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도금 취급담당자는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하여 예산담당자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선금의 지급)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4. 운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위탁비, 사례금, 보조금 및 부담금
 10. 공사가 매수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과 그 부대비 및 위탁수수료
 11. 계약요강에 따라 지급되는 선금
 12. 체크카드 전용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경비
 1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 ② 선금 지급에 따른 업무가 끝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장표

제1절 전표

제21조(전표의 발행 및 승인) 전표는 업무담당자가 발행하고 회계담당자가 승인한다.

제22조(오류전표의 정정) ① 전표 발행후 승인전에는 전표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일일마감 전에 승인전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전산기록한 후 처리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일일마감 후에 발견된 오류전표는 발견일자에 수정전표를 발행하여 처리하되, 적요에 오류전표 발생일자·수정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손익계정의 환입 환출전표) ① 회계기간 중에 손익계정이 환입 또는 환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손익 계정에서 직접 차감(예를 들면, 지급한 ‘경비’에 대한 환입건은 대변에 ‘경비’ 전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

② 전기손익으로 처리한 것을 환입 또는 환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절 장부

제24조(회계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계정별잔액명세서 및 현금출납장 등을 포함한다.

제25조(회계장부의 신설 및 폐쇄) 회계장부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이를 신설 및 폐쇄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장부의 보관) 전산화된 회계장부는 서류의 보관을 생략하되, 관련 회계장부는 전산조회로 항시 장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수기장부의 기재원칙) ① 수기장부는 명료하게 기입하고 지우개, 칼 등으로 지워서는 아니된다.

② 잔액의 대차구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정당한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④ 장부에 정규란 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8조(수기장부의 정정) ① 기장착오로 한 행을 전부 말소할 때에는 두줄의 붉은색 평행선으로 지우고 “빈칸” 또는 “BLANK”라 표시한다.

② 여러 행이나 전면에 걸쳐서 착오기입 또는 면을 떼어 기입함으로써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전체에 걸쳐서 두 줄의 붉은색 평행사선을 긋고 “빈칸” 또는 “BLANK”라 표시한다.

③ 말소선위에는 취급자와 담당팀장이 검인하여야 한다.

- 제29조(장부의 이월과 마감)** ① 회계장부의 이월과 마감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기장부의 경우에는 담당팀장이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3절 마감

- 제30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감후 취급은 하지 아니한다.

- 제31조(마감절차)** ① 각 회계단위는 발행된 전표의 금액, 계정과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표가 전산으로 자동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승인할 수 있다.
 ② 전표승인자는 발행전표가 자금관련 계정과목일 경우에는 시제실물 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후 전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본사 회계담당 부서는 전표승인을 완료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 제32조(회계장부 잔액의 확인)** ① 각 회계단위는 일일마감 후에 자금관련 계정잔액과 시제실물을 대조하여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월말 마감시에는 회계장부 잔액과 시제실물과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계정과목(수익증권 등)에 대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결산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사 각 부서 및 지사는 미수보험료계정, 미결산계정 등 해당업무 관련 회계잔액의 적정계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전용 결제계좌의 경우에는 「자금취급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3조(예금계정의 대사)** ① 모든 예금계정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의 잔액과 대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예금(해외지사) 계정의 대사에 관하여는 「국외지사 예산 및 자금관리요령」을, 체크카드 전용 결제계좌의 경우에는 「자금취급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잔고증명은 인터넷뱅킹 계좌잔액조회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4조(장부 및 전표의 감사)** 각 회계단위는 일일마감 담당직원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관련 전표내용과 시제실물과의 일치여부
 2. 자금관련 회계장부 잔액과 시제실물의 잔액 일치여부
 3. 기타 회계관리부서장(지사장 포함)이 명령한 사항

- 제35조(국외지사의 증빙서류, 장표의 보관 및 보전)** 국외지사의 장표 및 증빙서류는 국외지사에서 보존·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에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처리

제1절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제36조(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국고금으로 분류한다.

②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으로 한다.

③ 국고금은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등으로 한다.

제37조(장·단기 금융상품의 분류) ① 장·단기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으로 한다.

② 기타의 정형화된 금융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CP), 수시입출금 금전신탁(MMT) 등을 말한다.

③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분은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1년초과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제38조(장·단기투자증권의 분류) ①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한다.

②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제39조(투자증권의 평가) ①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③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④ 지분증권과 기타 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장·단기투자증권중 재정상태표일 기준 신뢰성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금액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 항목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⑥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의 신뢰성있는 추정액을 사용한다.
2. 지분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재정상태표일의 종가로 하되, 재정상태표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종가를 사용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과 직전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 적용한다.

제40조(투자증권의 감액과 회복)

①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투자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② 감액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금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투자증권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③ 채무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을 중지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이 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채무증권의 장부가액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제41조(정부예탁금) 정부예탁금은 정부내단기예탁금 또는 정부내장기예탁금으로 한다.

제42조(구상채권) ① 수출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금액은 보험금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구상채권 및 구상이익을 계상하며,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회수금수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구상채권을 차감하고 구상채권차감비를 계상한다.

② 사고조사결과 연계운용 보험종류의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당해 보험종류의 보험금비용으로 상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구상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여 종결처리된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동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구상채권상각비) 처리한다.

④ 대위변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재산조사비용,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수수료 및 특수(상각)채권에 대한 채권회수관련 비용은 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한다.

⑤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비용은 면책처분 또는 소송패소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한다.

제43조(구상전환증권) ① 보험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 채권 등은 구상전환증권으로 한다.

② 구상전환증권의 분류 및 평가는 제38조 및 제39조의 투자증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내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4조(채권의 소멸시기) ①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처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소멸처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생불능으로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일반유형자산·무형자산

제45조(취득일)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실제 운전 또는 사용개시일,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 접수일이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제46조(취득가액) 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으로 하고, 교환,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며, 동 자산을 취득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47조(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일반유형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해당 일반유형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결산시점의 일괄적인 기성평가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성 있는 기성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대금지급액으로 계상한다.

제48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입목, 예술품,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4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따라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그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⑤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0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51조(잔존가액) ①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완료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잔존가액이 0원인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2조(장부가액·내용연수 변경시의 상각) 자본적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자본적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제53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회계연도 중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한다.

제54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56조(법인세법의 준용)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상각방법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기준) ①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수익적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한다.

②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국외지사의 감가상각) 국외지사의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본사에서 처리한다.

제3절 보험료·보험금 등

제59조(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계약체결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납부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미수보험료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수익으로 계상한다.

제60조(보험료의 수납) ① 제59조에 따른 보험료를 수납한 때에는 수납일자로 해당건 미수보험료를 차감 처리한다.

- ②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보험료가 입금되면 부채계정인 선수보험료계정에 계상하고 추후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동 성립일자로 보험료수익 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 ③ 수납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 때 또는 보험료를 초과수납 및 과소수납한 때에는 당해 수납보험료를 정산시까지 일시 선수보험료로 계상할 수 있다.

제61조(보험료의 환급) ① 전기 이전에 인수한 보험계약의 무효, 실효, 해지, 이중부보, 계산착오 등으로 당해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일자로 환급금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 ② 당기에 인수한 보험계약의 무효, 실효, 해지, 이중부보, 계산착오 등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의 보험료전액을 보험료수익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기표한다.
- ③ 제2항의 거래발생으로 공사에 귀속하는 일부 보험료수익이 있는 경우는 해당액을 기타 영업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급할 보험료를 지급할 때까지 선수보험료로 일시계상할 수 있다.

제62조(보험금의 지급 및 회수) ① 보험금지급(가지급보험금 포함)시는 보험금비용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지급 후 보험자 대위권행사 등으로 당해 보험금지급건에 대하여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는 자(수출입계약상대방 포함)로부터 수출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때에는 회수금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 ② 보험계약자 등의 회수금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 및 채무재조정(Rescheduling)에 따른 수입이자(는) 기타영업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 ③ 보험금지급등과 관련한 소송 제비용,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추심수수료, 특수(상각)채권 및 보험자 대위채권 보전조치 비용은 발생시 수수료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제63조(기금의 출연) 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수령일에 수령금 전액을 정부출연금계정에 계상한다.

- ②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수령일에 전액을 기타 출연금계정에 계상한다.

제64조(배정예산 등의 송금 및 집행) ① 배정예산 등을 집행하기 위한 자금을 국외사무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화예금(해외지사)로 계상하며, 송금에 따른 부대비용은 비용(경비) 처리한다.

- ② 제1항에서 배정예산의 국외사무소 앞 송금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65조(전기오류의 수정) ①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②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제66조(계약보증금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또는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

증보험증권 및 국채, 지급보증서 등은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기타수익으로 계상한다.

제4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67조(충당부채)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충당부채는 지급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책임준비금 적립) 책임준비금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9조(책임준비금 등의 회계처리) ①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말 결산시 결산일 현재 미경과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을 산출하여 그 산출액이 전기말 현재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전입액 및 지급준비금 전입액으로 비용처리하며, 그 산출액이 전기말 현재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환입액 및 지급준비금 환입액으로 수익처리한다.

② 비상위험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말 결산시에 부채계정의 비상위험준비금에 누적으로 적립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으로 비용처리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 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③ 비상위험준비금은 동일 사유로 발생된 사고건의 지급보험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와 환변동보험 운영손실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지급보험금액 및 환변동보험 운영손실 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입액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 순손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비상위험준비금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상위험준비금 해당액을 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계정으로 수익처리하며, 전기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당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0조(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출기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결산일 현재 무역보험 계약 건별로 산출된 유효계약보험료 중 미경과기간(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역보험 종류별로 계상한다.

$$\text{미경과보험료적립금} = \sum \text{건별 유효계약보험료} \times \frac{\text{미경과기간}}{\text{총보험기간}}$$

제71조(지급준비금의 산출기준) ①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사고계류금액 중 보험금 지급 예상액
2. 청구계류금액 중 보험금 지급 예상액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통지를 한 금액
 4.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계류금액
 5. 결산일 현재 사고발생통지 또는 보험금청구는 되지 않았으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산출방법
사고계류금액 중 보험금지급 예상액	· 보험종목별로 결산일 현재 사고계류금액 x 보험금 지급 경험률 ^{주)} 주) 보험금 지급 경험률 = 과거 10년간(기준연도 포함) 사고 대비 청구율 x 청구 대비 보험금 지급률
청구계류금액 중 보험금지급 예상액	· 보험종목별로 결산일 현재 청구계류금액 x 보험금 지급 경험률 ^{주)} 주) 보험금 지급 경험률 = 과거 10년간(기준연도 포함) 청구 대비 보험금 지급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통지를 한 금액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통지를 한 금액. 다만, 이의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된 건 및 이의신청 기각 확정된 건은 제외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소송계류금액	· 소송진행 현황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 등을 개별 건별로 고려하여 산정
결산일 현재 사고발생통지 또는 보험금청구는 되지 않았으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 보험종목별로 결산일 현재 유효계약금액 x 보험금 지급 경험률 ^{주)} 주) 보험금 지급 경험률 = 과거 10년간(기준연도 포함) 유효계약 금액 대비 사고통지율 x 사고 대비 청구율 x 청구 대비 보험금 지급률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액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건에 대해서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사고진행 현황, 「리스크관리·측정요령」에 따른 익스포저의 크기 및 산업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건별로 선정 후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계상하며, 보험금이 수 년에 걸쳐 지급 예정되는 사고건의 경우 지급예정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예정회수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계상한다.

제72조(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기준) ①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보험료에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적립기준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누적적으로 계상한다.

$\text{비상위험준비금} = \text{MIN} [\text{① } \sum(\text{연도별 경과보험료} \times \text{최대 적립기준율}), \text{② 경과보험료} \times \text{「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p>* 경과보험료 산식 = (당해년도 수입보험료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환입) - (당해년도 환급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립)</p>

② 비상위험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3조(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제5절 예수금, 가수금과 가지금

제74조(미결산계정 처리원칙) 미결산계정(가수금, 가지금)은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일시적인 수입금이나 지급금을 처리하는 가계정이므로 조속히 본 계정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예수금 및 가수금) ① 예수금계정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를 계리한다.

1. 출납과잉금
 2. 손익계정에 수입될 이자, 수수료 등 내입금
 3.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내입액
 4. 동산, 부동산, 소유유가증권 등의 매각 내입금(경우에 따라 대전전액수입금)
 5. 임직원 부담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공제액 및 원천징수 예수금
 6. 기타 거래내용이 명확한 일시적인 입금
- ② 거래내용,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불명확한 일시적인 입금거래는 가수금계정으로 계리한다.

제76조(가지금) ①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가지금 계정으로 계리한다.

1. 출납부족금
 2. 지사 개설준비에 따른 소요자금 송금액
 3.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구입을 위한 계약금, 선금, 중도금 등
 4. 그 밖에 특정계정에 계상할 수 없는 일시적인 지급
- ② 가지금 품의서에는 결제방법과 정리에정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결산

제1절 결산정리

제77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결산계정(가수금, 가지금)을 본 계정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손익계산기록의 보정) 규정 제47조에 따라 해당 손익계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야 한다.

1. 선급비용
다음기의 비용에 속하는 선급이자 등의 선급비용에 대하여는 손익계정 중의 해당비용계정 대변에 기재하고 자산계정 중 선급비용계정 차변에 기재하여 다음기에 이월한다.
2. 선수수익
다음기의 수익에 속하는 선수이자 등의 선수수익에 대하여는 손익계정 중의 해당수익

계정 차변에 기재하고 부채계정 중 선수수익 계정 대변에 기재하여 다음기에 이월한다.

3. 미지급비용

당기에 속하는 지급이자, 수수료 및 기타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는 손익계정 중의 해당비용계정 차변에 기재하고 부채계정 중의 미지급비용계정 대변에 기재하여 다음기에 이월한다.

4. 미수수익

당기에 발생하고 다음 기중에 수입이 확실한 미수수익은 손익계정 중 해당수익계정 대변에 기재하고 자산계정 중의 미수수익계정 차변에 기재하여 이월한다.

제79조(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기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적립되도록 설정한다. 다만, 국외사무소 등의 현지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현지법령 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결산일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적립할 금액은 당해 연도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총소요액에서 전년도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을 차감하고 당해년도 중 동 충당부채 사용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은 제2항의 적립할 금액을 퇴직급여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상대계정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으로 부채 처리한다.

제80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결산기말 현재 구상채권잔액에 대해 최근 10년간 경과기간별 회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회계담당 부서 장](#)이 정한다. 다만, 회수예정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예정액의 현재가치와 구상채권잔액과의 차이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② 결산일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당해 연도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총소요액에서 전년도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잔액을 차감하고 당해년도중 동 충당금 사용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은 제2항의 적립할 금액을 구상이익 계정에서 차감하고 동 계정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상채권상각비 계정으로 비용처리하며 상대계정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으로 부채처리한다.

제81조(대손충당금) ① 대손충당금은 결산기말 현재 회수되지 않은 환변동보험 [이익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립기준과 경험손실을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정액중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대손손실률은 [이익금](#)을 발생원천에 따라 입찰건과 선물환건으로 구분하여 이를 일시납건과 분할상환건으로 세분하는 방식으로 그룹화하고, 결산일 기준 최근1년간 월별 연체데이터로 그룹별 연체전이율을 계산한 후 각 연체월별 [이익금](#)에 기간별 연체전이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정한다.

③ 대손충당금은 매 결산일 현재 산출한 금액이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며, 그 산출액이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액으로 수익처리한다.

제82조(외화환산) ① (기중거래) 외화자산 및 부채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시 동 금액은 영업외비용(외환차손) 또는 영업외수익(외환차익)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원화의 수입, 지출이 없는 외화거래에 대한 적용환율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거래당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

② (결산거래) 결산일 현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하여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결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평가를 실시하여 그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원화금액의 차이를 당기의 평가이익(외화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외화평가손실)로 계상한다.

제83조(미지급법인세 등)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소득할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다)를 추산하여, 동 금액에서 당기예납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하고, 추산액에 비하여 예납액이 클 경우 차액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한다.

제84조(이연법인세자산 등) 세무상 법인세비용이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상 법인세비용이 세무상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처리한다.

제85조(환변동보험조정(차) 등) ① 환변동보험계약별 공정가액은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통화안정채권 이자율 등 적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인하여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정가액 산정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변동보험조정(차)로 처리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환변동보험조정(대)로 처리한다.

③ 환변동보험계약은 계약시점부터 재무제표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④ 환변동보험조정차에 대해 **이익금**을 발생원천에 따라 입찰건과 선물환건으로 구분한 후 최근1년간 **이익금** 발생액의 분할상환 전환비율을 적용하여 일시납건과 분할상환건 대상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그룹화하고, 그룹별 대상금액에 제81조제2항에서 계산된 무연체 **이익금**의 연체전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손추정액을 산출하며, 이를 환변동보험조정차 및 환변동보험평가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제86조(이자율변동보험조정(차) 등) ① 이자율변동보험계약별 공정가액은 결산일 현재 결제시점을 만기로 하는 통화안정채권 이자율 등 적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인하여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정가액 산정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율변동보험 조정(차)로 처리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율변동보험 조정(대)로 처리한다.

③ 이자율변동보험계약은 계약시점부터 재무제표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제87조(헤지거래) ① 통화선도 등 헤지거래계약의 공정가액은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동일한 거래의 통화선도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통화안정채권 이자율 등 적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이자율스왑 등 헤지거래계약의 공정가액은 결산일 현재 결제시점을 만기로 하는 통화안정채권 이자율 등 적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상품선도 등 헤지거래계약의 공정가액은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동일한 거래의 상품선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통화안정채권 이자율 등 적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인하여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정가액 산정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선도(차) 또는 이자율스왑(차) 등으로 처리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선도(대) 또는 이자율스왑(대) 등으로 처리한다.

③ 헤지거래계약은 계약시점부터 재무제표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제88조(잠정보고) 국외지사는 보고 등의 지연으로 본사의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기한 내에 추정 또는 잠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 또는 장부의 마감일 끝나는 대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결산실시

제89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장부의 결산 마감일자는 12월 31일로 하고 이월일자는 1월 1일로 한다.

② 결산 당일에 결산정리(손익계산기록의 보정, 자산과 부채계산기록의 수정 등) 절차를 종료한 후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를 마감하고 각 계정잔액(손익계정 제외)을 다음기로 이월한다.

③ 장부 및 총계정원장의 마감, 이월업무는 전산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90조(결산서 세부내용)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규정 제50조에 따른다.

제91조(가결산지침 및 손익예상지침) 가결산 및 손익예상에 관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사장이 따로 정하는 가결산지침 및 손익예상지침에 따른다.

제92조(가결산 및 손익예상) 가결산 및 손익예상은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며, 손익계정의 보정 및 자산·부채의 평가는 제1절 결산정리에 따르되, 기표 및 장부의 기장마감 등의 절차는 밟지 아니하고 가결산일 현재의 손익 및 기말의 예상손익을 산출한다.

가결산	손익예상
가. 가결산 회계처리 명세표	가. 손익예상 회계처리 명세표
나. 가결산 전·후 재정상태표	나. 11월30일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다. 가결산 전·후 재정운영표	다. 연말추정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라. 기타 가결산지침에 정한 부속서류	라. 기타 손익예상지침에 정한 부속서류

부칙(제정)

이 요강은 1992. 7. 7부터 시행한다

단, 예산에 관한 사항은 1993.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1)

이 요강은 1992. 12. 30부터 시행한다
단, 예산에 관한 사항은 1993.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2)

이 요강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요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요강은 199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요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요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요강은 200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요강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1조 (보험계약준비금의 회계처리)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 ① 이 요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0)

이 요강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 ① 이 요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2)

- ① 이 요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3)

- ① 이 요강은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4)

- ① 이 요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5)

- ① 이 요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6)

- ① 이 요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7)

- ① 이 요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8)

- ①이 요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9)

- ①이 요강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

①이 요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요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1)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처리된 회계방법과 절차는 이 요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계정과목일람표

(자산계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I. 현금 및 예치금	(1) 현금과 예금	CASH AND BANK DEPOSITS			
	1. 당좌예금	BANK DEPOSITS CURRENT DEPOSITS		1. 현금및현금성자산(당좌예금)	
	2. 제예금	SUNDRY DEPOSITS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통예금, 기타현금성자산)	
	3. 정기예금	TERM DEPOSITS		2.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기타의단기금융상품) 7.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기타의장기금융상품)	
	4. 외화예금	FOREIGN CURRENCY DEPOSITS		1.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5. 외화예금 (해외지사)	FOREIGN CURRENCY DEPOSITS (REPRESENTATIVE OFFICE)		1.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6. 해외지사전도금	TRANSFER TO OVERSEAS REPRESENTATIVE OFFICE	국외사무소앞 예산승금액으로 기타자산에서 현금 및 예치금으로 재분류	1.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2) 선물거래예치금	GUARANTEE DEPOSITS FOR TRADING FUTURES	선물거래관련 증거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SECURITIES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II.유가증권	(1) 단기매매증권	TRADING SECURITIES	단기간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1. 주식	STOCK		3. 단기투자증권(지분증권)
	2. 회사채	CORPORATE BONDS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2) 매도가능증권	SECURITIES AVAILABLE FOR SALE		
	1. 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S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이외의 증권	3. 단기투자증권(지분증권) 8.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
	2. 출자전환주식	DEBT-EQUITY SWAP	회사채 투자의 출자전환증권	8.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
	<u>3. 매도가능증권(주식)</u>	<u>SECURITIES AVAILABLE FOR SALE</u>	<u>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중 주식</u>	<u>8.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u>
	<u>4. 구상전환증권(주식)</u>	INDEMNITY-EQUITY SWAP	구상채권회수로 취득한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	8.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
	<u>5. 구상전환증권(채권(매도가능증권))</u>	INDEMNITY-BOND SWAP	구상채권회수로 취득한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u>6. 구상전환증권(파생상품)</u>	<u>INDEMNITY-BOND SWAP</u>	<u>구상채권회수로 취득한 유가증권 중 파생상품</u>	<u>8.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u> <u>6. 기타유동자산(파생상품자산)</u> <u>10. 기타투자자산(파생상품자산)</u>
	<u>7. 국채(매도가능증권)</u>	GOVERNMENT BONDS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중 국채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u>8. 공채(매도가능증권)</u>	PUBLIC BONDS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중 공채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u>9. 회사채(매도가능증권)</u>	CORPORATE BONDS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3) 만기보유증권	SECURITIES HELD TO MATURITY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1. 국공채(투자)	GOVERNMENT AND OTHER PUBLIC BONDS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2. 회사채(투자)	CORPORATE BONDS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3. 구상전환증권(채권)	INDEMNITY-BOND SWAP	구상채권회수로 취득한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	3. 단기투자증권(채무증권) 8. 장기투자증권(채무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III. 정부예탁금	(1) 공공자금 관리기금	GOVERNMENT DEPOSITS		5. 단기대여금 8. 장기대여금
IV. 유형자산	(1) 토지	TANGIBLE ASSETS LAND	업무용 토지 (부대비용 포함)	11. 일반유형자산(토지)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BUILDINGS (ACCUMULATED DEPRECIATION)	업무용 건물 및 동 부속설비	11. 일반유형자산(건물)
	(3)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VEHICLES (ACCUMULATED DEPRECIATION)	승용차 및 기타차량(부대비용 포함)	11. 일반유형자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4) 공구기구비품 (감가상각누계액)	FURNITURE & FIXTURE (ACCUMULATED DEPRECIATION)		11. 일반유형자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5) 건설중인자산	CONSTRUCTION IN PROGRESS	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된 제경비	11.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6) 정부보조금	GOVERNMENT SUBSIDY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비교환수익(제정운영표)
	(7) 정보화자본예산	INFORMATION TECHNOLOGY CAPITAL BUDGET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	12.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
	(8) 지역거점수출중기 센터	REGIONAL EXPORT CENTER	지역 수출 지원, 촉진활동을 위한 건물 및 부속설비	11. 일반유형자산(건물)
	(9) 디지털인프라취득	DIGITAL INFRASTRUCTURE ACQUISITION	디지털인프라 확보 및 구축 자산 취득	6. 기타유동자산(선급금) 11. 일반유형자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2.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
V. 기타자산	(1) 투자부동산	INVESTMENT IN REAL PROPERTIES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1. 토지	LAND		10. 기타투자자산 (기타의기타투자자산)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BUILDINGS (ACCUMULATED DEPRECIATION)		10. 기타투자자산 (기타의기타투자자산)
(2) 보험미수금 1. 미수보험료	ACCRUED PREMIUM INCOME RECEIVABLE	수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미수취한 보험료	4. 미수채권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3) 미수금	RECEIVABLE	보험영업이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4. 미수채권(기타의 미수금)
	(4) 미수수익			
	1. 미수이자	ACCRUED INTEREST INCOME	당기에 속하는 이자중 미수금액	4. 미수채권(미수이자수익)
	2. 기타 미수수익	OTHER ACCRUED INCOME		4. 미수채권(미수기타수익) 13.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기타수익)
	3. 대손충당금 (기타 미수수익)	APPROPRIATION FOR OTHER ACCRUED INCOME		4.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기타수익) 13.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장기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
	(5) 미수수료	COMMISSIONS RECEIVABLE	당기에 속하는 수수료수익중 미수금액	4. 미수채권(미수재회 및 용역제공수익)
	(6) 선급비용	PREPAID EXPENSE	당기지출비용중 차기이후에 해당비용	
	1. 기타선급비용	OTHER PREPAID EXPENSE		6.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
	(7) 선급법인세	PREPAID INCOME TAX	기중 원천징수된 법인세 또는 중간예납 법인세	6. 기타유동자산(선급법인세)
	(8) 구상채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RIGHT OF INDEMNITY (ALLOWANCE FOR RIGHT OF INDEMNITY) (CASH VALUE DISCOUNT)	신용보증채무이행액 및 관련비용 등	14.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구상채권)
	(9) 가지급금	SUSPENSE RECEIVABLE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일 시적 지급금	6. 기타유동자산(선급금)
	(10) 임차보증금	GUARANTEE FOR BUSINESS PREMISE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에 따른 보증금	6. 기타유동자산(지급보증금) 14.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11) 전화가입권	TELEPHONE SUBSCRIPTION RIGHTS	전화사용 보증금	14.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12) 공탁금	DEPOSITS		14.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13) 임직원장기대여금	LOANS TO EMPLOYEES		5. 단기대여금 8. 장기대여금
(14) 이연법인세자산	DEFERRED INCOME TAX DEBITS	재무회계상 법인세를 초과하는 세무회계상 법인세	
(15) 통화선도(차)	CURRENCY FORWARD EXCHANGE APPRAISAL DEBITS	통화선도거래 평가계정	6. 기타유동자산(파생상품자산) 10. 기타투자자산(파생상품자산)
(16) 통화옵션(차)	CURRENCY OPTIONS APPRAISAL DEBITS	통화옵션거래 평가계정	6. 기타유동자산(파생상품자산) 10. 기타투자자산(파생상품자산)
(17) 환변동보험조정(차)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PPRAISAL DEBITS	환변동보험 지급보험금 또는 환수익 평가계정	6. 기타유동자산(파생상품자산) 10. 기타투자자산(파생상품자산)
(18) 이자율변동보험조정(차)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APPRAISAL DEBITS	이자율변동보험 지급보험금 또는 환수익 평가계정	6. 기타유동자산(파생상품자산) 10. 기타투자자산(파생상품자산)
(19)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1. 개발비	DEVELOPMENT COSTS		12.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
2. 기타무형자산	OTHER INTANGIBLE ASSETS		12.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
(20) 본지사	INTER-OFFICE	본사와 지사 등 부서간 거래	6. 기타유동자산 (기타의기타유동자산)
(21) 구조조정기업대여금	LOANS TO RESTRUCTURING COMPANIES	채권금융기관 협의에 따른 신규 출연자금 분담금	5. 단기대여금 8. 장기대여금
(22) 미수이자(구조조정기업)	ACCRUED INTEREST INCOME FROM RESTRUCTURING COMPANIES	채권금융기관 협의에 따른 신규 출연자금 분담금에 따른 미수이자	4. 미수채권(미수이자수익) 13. 장기미수채권(장기미수이자수익)
(23) 신용카드결제 미수금	CREDIT CARD PAYMENT RECEIVABLE	신용카드결제로 받을 정산대금	4. 미수채권(기타의 미수금)
(24) 계좌이체결제 미수금	ACCOUNT TRANSFER PAYMENT RECEIVABLE	계좌이체결제로 받을 정산대금	4. 미수채권(기타의 미수금)
(25) 부가세대금금	PREPAID VALUE ADDED TAX	물건 또는 용역 구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6. 기타유동자산(부가세대금금)
(26) 기타	OTHERS		10. 기타투자자산 (기타의기타투자자산)

(부채 및 기금계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부채) I.책 임 준 비 금	(1)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PROVISIONS FOR RESPONSIBILITY RESERVES FOR DEFERRED PREMIUM	장래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총당할 준비금 회계년도말 이전에 수납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기타부채)
	(2) 지급준비금	PROVISIONS FOR CLAIMS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	17. 보험총당부채 18. 기타장기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3) 비상위험준비금	<u>PROVISIONS FOR CONTINGENCIES</u>	<u>보험료중 거액 보험금 및 환변동보험 지급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u>	<u>17. 보험총당부채</u> <u>18. 기타장기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u>
II.차 입 부 채	(1)무역보험기금채권 (무역보험기금채권 할인발행차금) 무역보험기금채권 할증발행차금	BONDS (DISCOUNT ON BOND) PREMIUM ON BOND	무역보험공사가 발행하는 기금채권 무역보험기금채권 액면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III.기 타 부 채	(1) 보험미지급금	OTHER LIABILITIES PAYABLE ON INSURANCE	비용을 인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2) 미지급금	PAYABLE	보험영업이외 거래발생 미지급채무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3) 환급보험료	<u>REFUNDABLE PREMIUM INCOME</u>	<u>보험계약상대방에게 미반환한 보험(보증)료 환급 대상액</u>	<u>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u>
	(4) 미지급비용 1.미지급무역 보험기금채권이자 2.기타미지급비용	ACCRUED EXPENSE ACCRUED INTEREST EXPENSE ON BONDS OTHER ACCRUED EXPENSE	당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5) 가수금 1.기타가수금	SUSPENSE PAYABLE OTHER SUSPENSE PAYABLE		15. 기타유동부채 (선수수익)
(6)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SEVERANCE & RETIREMENT BENEFIT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ASSET)	임직원퇴직금 지급을 위한 총당금	16. 퇴직급여충당부채
(7) 선수보험료	UNEARNED PREMIUM	보험계약 성립이전에 납부된 보험료 등	15. 기타유동부채 (선수수익)
(8) 미지급법인세	UNPAID INCOME TAX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금액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9) 예수금	TEMPORARY ACCOUNT	지급하여야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징수한 세금 등	15. 기타유동부채 (예수금)
(10) 선수수익	UNEARNED INCOME	수입금액중 차기이후에 속하는것	15. 기타유동부채 (선수수익)
(11) 이연법인세부채	DEFERRED INCOME TAX CREDITS	회계상 법인세가 세무상 법인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12) 통화선도(대)	CURRENCY FORWARD EXCHANGE APPRAISAL CREDITS	통화선도거래 평가계정	15. 기타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파생상품부채)
(13) 통화옵션(대)	CURRENCY OPTIONS APPRAISAL CREDITS	통화옵션거래 평가계정	15. 기타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파생상품부채)
(14) 환변동보험 조정(대)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PPRAISAL CREDITS	환변동보험 지급보험금 또는 환수익 평가계정	15. 기타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파생상품부채)
(15) 이자율변동보험 조정(대)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APPRAISAL CREDITS	이자율변동보험 지급보험금 또는 환수익 평가계정	15. 기타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파생상품부채)
(16) 위탁금	TRUST MONEY	대외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금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금)
(17) 임대보증금	LEASEHOLD DEPOSITS PROVIDED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에 따른 보증금	15. 기타유동부채(예수보증금)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18) 부가세예수금	VALUE ADDED TAX WITHHELD	물건 또는 용역 제공시 수취하는 부가가치세	15. 기타유동부채 (예수금)
	(19) 신용카드결제 미수금 (취소)	CREDIT CARD PAYMENT RECEIVABLE(CANCELLATION)	신용카드결제대금 취소 금액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20) 계좌이체결제 미수금(취소)	ACCOUNT TRANSFER PAYMENT RECEIVABLE(CANCELLATION)	계좌이체결제대금 취소 금액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21) 연차수당충당부 채	ACCRUED ANNUAL LEAVE LIABILITY	차기연도 임직원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지급예상액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비용)
	(22) 경영성과급충당 부채	ACCRUED MANAGEMENT PERFORMANCE BONUS LIABILITY	차기연도 임직원 대상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예상액	15. 기타유동부채 (미지급비용)
	(23) 기 타	OTHERS		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기타부채)
(기 금) I. 출 연 금	(1) 정부출연금	EXPORT INSURANCE FUND GOVERNMENT CONTRIBUTED FUND	무역보험기금의 조성으로 정부가 출연한 금액	21. 기본순자산 22. 적립금및잉여금 (출연금의 증가)
	(2) 기타출연금	OTHER CONTRIBUTED FUND	무역보험기금의 조성으로 정부이외의 자 가 출연한 금액	22. 적립금및잉여금 (출연금의 증가)
II.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RETAINED EARNINGS LEGAL RESERVE	순이익 발생시 무역보험법에 의거 전액 적립	22. 적립금및잉여금
	(2) 차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결손금) (당기순이익)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DEFICIT) CARRIED OVER TO SUBSEQUENT YEAR (NET INCOME(LOSS) FOR CURRENT YEAR)		22. 적립금및잉여금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Ⅲ.기타포괄손익 누계액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LOSS)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손실)	GAIN (LOSS) ON VALUATION OF SECURITIES AVAILABLE FOR SALE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가액과 의 차액	23. 순자산조정 (투자증권평가손익)
	(2) 자산재평가 이익잉여금	ASSET REVALUATION SURPLUS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재평가이익 누 계액	23. 순자산조정 (자산재평가이익)

(수익 및 비용계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p>I. 영업수익</p>	<p>OPERATING INCOME PREMIUM INCOME</p> <p>PREMIUM INCOME</p> <p>(1) 보험료수익</p> <p>1. 보험성종목</p> <p>2. 보증성종목</p>	<p>보험계약 성립에 따른 보험료 수입</p> <p>단기수출보험 등 보험성 종목 보험료 수입</p> <p>수출신용보증 등 보증성 종목 보증료 수입</p>	<p>2. 프로그램수익(보험수익)</p> <p>5. 프로그램수익(보증수익)</p>
<p>(2) 회수금수익</p> <p>1. 보험성종목</p> <p>2. 보증성종목</p>	<p>CLAIMS RECOVERED</p>	<p>보험금 지급후 당해 손실금에 대한 권리 행사 결과 회수한 금액</p> <p>단기수출보험 등 보험성 종목 회수금 수입</p> <p>수출신용보증 등 보증성 종목 회수금 수입</p>	<p>2. 프로그램수익(보험수익)</p> <p>5. 프로그램수익(보증수익)</p>
<p>(3) 이자수익</p>	<p>INTEREST INCOME</p>	<p>금융상품 예치, 투자증권 보유, 채권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유가증권, 공탁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p>	<p>6. 이자수익(비배분수익)</p> <p>26. 프로그램수익(이자수익)</p>
<p>(4) 이자수익(구조조정기업)</p>	<p>INTEREST INCOME FROM RESTRUCTURING COMPANIES</p>	<p>채권금융기관 협의에 따른 신규 출연자금 분담금에 따른 이자 수입</p>	<p>6. 이자수익(비배분수익)</p> <p>26. 프로그램수익(이자수익)</p>
<p>(5) 배당금수익</p>	<p>DIVIDENDS INCOME</p>		<p>9. 기타수익(비배분수익)</p> <p>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p>
<p>(6)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p> <p>1. 매도가능(만기보유) 증권처분이익</p>	<p>GAIN ON DISPOSITION OR VALUATION OF SECURITIES</p> <p>GAIN ON DISPOSITION OF SECURITIES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 HELD TO MATURITY)</p>	<p>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수익처리</p>	<p>7. 자산처분이익(비배분수익)</p> <p>27. 프로그램수익(자산처분이익)</p>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2. 매도가능(만기보유) 증권손상차손환입	TRANSFER FROM SECURITIES AVAILABLE FOR SALE REDUCTION LOSS (SECURITIES HELD TO MATURITY)	감액평가된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동 금액(단, 매도가능증권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7) 외환거래이익	GAIN ON FOREIGN CURRENCY		
1. 외환차익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 발생하는 이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2. 외화환산이익	GAIN ON FOREIGN EXCHANGES TRANSLATION	환율변동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부채 환산이익	8. 평가이익(비배분수익) 3. 프로그램수익(평가이익)
(8) 수수료수익	COMMISSIONS INCOME		1. 프로그램수익(재화및용역 제공수익) 2. 프로그램수익(보험수익)
(9)미경과보험료적립금 환입액	TRANSFER FROM DEFERRED PREMIUM	전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10) 지급준비금환입액	TRANSFER FROM PROVISIONS FOR CLAIMS	전기 지급준비금의 환입액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11)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	TRANSFER FROM CONTINGENCY RESERVE	전기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액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12) 파생상품거래이익	GAI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1. 통화선도거래이익	GAIN ON CURRENCY FORWARD EXCHANGE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선도계약 거래이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2. 통화선물거래이익	GAIN ON CURRENCY FUTURES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선물계약 거래이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3. 통화옵션거래이익	GAIN ON CURRENCY OPTIONS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옵션계약 (RANGE FORWARD 포함) 거래이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4. 이자율스왑거래이익	GAIN ON INTEREST SWAP TRANSACTIONS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 거래이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13) 파생상품평가이익	GAIN ON VALUATION OF DERIVATIVES		
	1. 통화선도평가이익	GAIN ON VALUATION OF CURRENCY FORWARD EXCHANGE	결산기준일 현재 선도환율변동에 따른 보유 통화선도계약 평가이익	3. 프로그램수익(평가이익)
	2. 통화옵션평가이익	GAIN ON VALUATION OF CURRENCY OPTION	결산기준일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보유 통화옵션계약(RANGE FORWARD 포함) 평가이익	3. 프로그램수익(평가이익)
	3. 이자율스왑평가이익	GAIN ON VALUATION OF INTEREST SWAP	결산기준일 현재 선도환율변동에 따른 보유 통화선도계약 평가이익	3. 프로그램수익(평가이익)
	(14) 환변동보험평가이익	GAIN ON VALUATION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결산기준일 현재 환변동보험 환수예상 평가액	3. 프로그램수익(평가이익)
	(15) 환변동보험거래이익	GAIN O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환변동보험 거래이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2. 프로그램수익(보험수익)
	(16) 이자율변동보험평가이익	GAIN ON VALUATION OF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결산기준일 현재 이자율변동보험 환수예상 평가액	3. 프로그램수익(평가이익)
	(17) 구상이익	RIGHT OF INDEMNITY INCOME	지급된 보험금중 구상권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18) 대손충당금환입	REVERSAL OF APPROPRIATION	새로이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잔액보다 적을 경우의 환입액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19) 구상전환증권 처분이익	<u>GAIN ON DISPOSITION OF INDEMNITY-BOND SWAP</u>	<u>구상전환증권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수익처리</u>	27. 프로그램수익 (자산처분이익) 7. 자산처분이익(비배분수익)
(20) 구상전환증권 손상차손환입	<u>TRANSFER FROM INDEMNITY-BOND SWAP REDUCTION LOSS</u>	<u>감액평가된 구상전환증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동 금액(단, 구상전환증권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u>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21) 기타영업수익	OTHER OPERATING INCOME	보험료 및 회수금 납부지연등에 따른 연체이자 등 영업관련 기타수익	1. 프로그램수익(재화및용역제공수익)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II. 영업비용	(1) 보험금비용 <u>1. 보험성종목</u> <u>2. 보증성종목</u>	OPERATING EXPENSES CLAIMS PAID EXPENSES	보험금 지급액 <u>단기수출보험 등 보험성 종목 보험금 비용</u> <u>수출신용보증 등 보증성 종목 보험금 비용</u>	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 11. 프로그램원가(보증보조비용)
	(2) 환급금비용 <u>1. 보험성종목</u> <u>2. 보증성종목</u>	RETURNS OF PREMIUM INCOME EXPENSES	보험금액의 감액, 보험관계의 해지등에 따른 기수납보험료 의 환급등 <u>단기수출보험 등 보험성 종목 환급금 비용</u> <u>수출신용보증 등 보증성 종목 환급금 비용</u>	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 11. 프로그램원가(보증보조비용)
	(3) 수수료비용	COMMISSIONS EXPENSE		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
	(4) 신용카드결제수수료	CREDIT CARD PAYMENT COMMISSIONS EXPENSE	보험료 등 신용카드결제로 인 한 수수료	25. 프로그램원가(지급수수료)
	(5) 계좌이체결제수수료	ACCOUNT TRANSFER PAYMENT COMMISSIONS EXPENSE	보험료 등 계좌이체결제로 인 한 수수료	25. 프로그램원가(지급수수료)
	(6)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차입금등 관련 지급이자	<u>28 이자비용(비배분비용)</u> <u>29. 프로그램원가(이자비용)</u>
	(7)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1. 매도가능(만기보유) 증권처분손실	LOSS ON DISPOSITION OR VALUATION OF SECURITIES LOSS ON DISPOSITION OF SECURITIES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 HELD TO MATURITY)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의 처 분가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 는 경우 동금액 비용처리	18. 자산처분손실(비배분비용) <u>30. 프로그램원가(자산처분손실)</u>
	2. 매도가능(만기보유) 증권손상차손	LOSS ON VALUATION OF SECURITIES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 HELD TO MATURITY)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의 공 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 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과 차이 손실처리	19.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 <u>31. 프로그램원가(자산감액손실)</u>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8) 외환거래손실	LOSS ON FOREIGN CURRENCY			
1. 외환차손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손실	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 20. 기타비용(비배분비용)	
2. 외화환산손실	LOSS ON FOREIGN EXCHANGES TRANSLATION	환율변동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부채 환산손실	17. 평가손실(비배분비용) <u>13. 프로그램원가(평가손실)</u>	
(9) 구상채권차감비	DEDUCTION OF RIGHT OF INDEMNITY	구상채권 회수의 회수금수익 처리 에 따른 차감 계정	12. 프로그램원가(대손상각비)	
<u>(10) 구상전환증권 처분손실</u>	<u>LOSS ON DISPOSITION OF INDEMNITY-BOND SWAP</u>	<u>구상전환증권의 처분가액이 장부가 액을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 비용 처리</u>	<u>18. 자산처분손실(비배분비용)</u> <u>30. 프로그램원가(자산처분손실)</u>	
<u>(11) 구상전환증권 손상차손</u>	<u>LOSS ON VALUATION INDEMNITY-BOND SWAP</u>	<u>구상전환증권의 공정가액이 하락 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과 차이 손실처리</u>	<u>19.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u> <u>31. 프로그램원가(자산감액손실)</u>	
<u>(12)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전입액</u>	TRANSFER TO DEFERRED PREMIUM	당기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적립	<u>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u>	
<u>(13) 지급준비금 전입액</u>	TRANSFER TO PROVISIONS FOR CLAIMS	당기 지급준비금 적립	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 11. 프로그램원가(보증보조비용)	
<u>(14)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u>	<u>TRANSFER TO PROVISIONS FOR CONTINGENCIES</u>	<u>당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u>	<u>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u> <u>11. 프로그램원가(보증보조비용)</u>	
<u>(15) 파생상품거래손실</u>	LOSS ON VALUATION OF DERIVATIVES TRANSACTIONS			
1. 통화선도거래손실	LOSS ON CURRENCY FORWARD EXCHANGE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선도계약 거 래손실	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	
2. 통화선물거래손실	LOSS ON CURRENCY FUTURES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선물계약 거 래손실	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	
3. 통화옵션거래손실	LOSS ON CURRENCY OPTIONS TRANSACTIONS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옵션계약 (RANGE FORWARD 포함) 거래손실	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	
4. 이자율스왑거래손실	LOSS ON INTEREST SWAP TRANSACTIONS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 거래손실	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16) 파생상품평가손실	LOSS ON VALUATION OF DERIVATIVES		
1. 통화선도평가손실	LOSS ON VALUATION OF CURRENCY FORWARD EXCHANGE	결산기준일 현재 선도환율변동에 따른 보유 통화선도계약 평가손실	13. 프로그램원가(평가손실)
2. 통화옵션평가손실	LOSS ON VALUATION OF CURRENCY OPTION	결산기준일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보유 통화옵션계약(RANGE FORWARD 포함) 평가이익	13. 프로그램원가(평가손실)
3. 이자율스왑 평가손실	LOSS ON VALUATION OF INTEREST SWAP	결산기준일 현재 선도환율변동에 따른 보유 통화선도계약 평가이익	13. 프로그램원가(평가손실)
(17) 환변동보험 평가손실	LOSS ON VALUATION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결산기준일 현재 환변동보험 손실예상 평가액	13. 프로그램원가(평가손실)
(18) 환변동보험 거래손실	LOSS ON TRANSACTION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환율변동에 따른 환변동보험 거래손실	14. 프로그램원가(기타비용) 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
(19) 이자율변동 보험평가	LOSS ON VALUATION OF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결산기준일 현재 이자율변동보험 손실 예상 평가액	13. 프로그램원가(평가손실)
(20) 관리업무비	ADMINISTRATIVE EXPENSES		
1. 인건비	SALARY & BENEFITS FOR EMPLOYEES	임직원 급여 등	15. 프로그램원가(직접원가) 16. 행정지원원가(간접원가)
2. 경비	GENERAL EXPENSES	기금관리업무비	15. 프로그램원가(직접원가) 16. 행정지원원가(간접원가)
3. 퇴직급여	SEVERANCE PAY	임직원퇴직급여 총당금등	15. 프로그램원가(직접원가) 16. 행정지원원가(간접원가)
4.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유형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15. 프로그램원가(직접원가) 16. 행정지원원가(간접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영문명칭	해설	국가회계기준 연계 계정과목
(21) 구상채권상각비	AMORTIZATION OF RIGHT OF INDEMNITY	회수불가능 구상채권상각시 설정총당금 부족분 비용처리	12. 프로그램원가(대손상각비)
(22) 공사채권회수비용	COLLECTING DEBT EXPENSES	공사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비용	24. 외주용역비(관리운영비) 23. 여비교통비(관리운영비) 32. 프로그램원가(외주용역비) 33. 프로그램원가(여비교통비)
(23) 국외채권추심비	COLLECTING OF FOREIGN RECEIVABLE EXPENSES	공사 국외채권회수를 위한 출장여비	23. 여비교통비(관리운영비) 33. 프로그램원가(여비교통비)
(24) 채권회수대행및 신용정보판매	COLLECTING OF RECEIVABLE AGENCY AND CREDIT INFORMATION SALES EXPENSES	채권추심기관 및 신용조사기관 업무대행 지급 수수료	24. 외주용역비(관리운영비) 32. 프로그램원가(외주용역비)
(25) 대손상각비	BAD DEBT EXPENSES		12. 프로그램원가(대손상각비)
(26) 수입자현지실사	EXPENSES FOR IMPORTER UNDERWRITING EVALUATION	수입자 인수심사를 위한 제반 비용	23. 여비교통비(관리운영비) 33. 프로그램원가(여비교통비)
(27) 프로젝트현지 실사비	PROJECT ACTUAL INSPECTION EXPENSES	인수 관련 현지 실사를 위한 제반 비용	23. 여비교통비(관리운영비) 33. 프로그램원가(여비교통비)
(28) 마케팅심사분석	MARKETING EVALUATION AND ANALYSIS		24. 외주용역비(관리운영비) 32. 프로그램원가(외주용역비)
(29) 재보험료	REINSURANCE FEE	재보험사에 보험을 인수시킨 후 지급한 대가	10. 프로그램원가(보험비용)
(30) 마케팅현지실사	MARKETING ON SITE INSPECTION	국내 수출중소기업 실사를 위한 제반 비용	23. 여비교통비(관리운영비) 33. 프로그램원가(여비교통비)
(31) 중기마케팅심사 분석	MID TERM MARKETING EVALUATION AND ANALYSIS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23. 여비교통비(관리운영비) 33. 프로그램원가(여비교통비)
(32) 중기심사역량강화	MID-TERM EVALUATION CAPABILITY ENHANCEMENT	국내 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연수)훈련 비용	35. 교육훈련비(관리운영비) 34. 프로그램원가(교육훈련비)
(33) 심사역량강화	EVALUATION CAPABILITY ENHANCEMENT	단기, 중장기, 신용보증, 환변동 보험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연수)훈련 비용	35. 교육훈련비(관리운영비) 34. 프로그램원가(교육훈련비)
(34)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DIGITAL SERVICE USAGE FEE	디지털인프라 구축 및 확보에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서비스 이용대금	36. 지급수수료(관리운영비) 25. 프로그램원가(지급수수료)

	(35) 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INFORMATION SYSTEM BUILDING SERVICE EXPENSES		24. 외주용역비(관리운영비) 32. 프로그램원가(외주용역비)
	(36) 수출중소기업 신용카드수수료	EXPORT SME CREDIT CARD COMMISSION FEES		36. 지급수수료(관리운영비) 25. 프로그램원가(지급수수료)
	(37) 데이터기반혁신 사업	DATA DRIVEN INNOVATION PROJECT	컨설팅, 자문 등 외부 업무용역 관련 경비 비용	24. 외주용역비(관리운영비) 32. 프로그램원가(외주용역비)
	(38) 디지털사업기반 구축	DIGITAL BUSINESS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디지털인프라 구축 및 확보 사업 관 련 경비 비용	24. 외주용역비(관리운영비) 32. 프로그램원가(외주용역비)
	(39) 기타영업비용	OTHER EXPENSES		36. 지급수수료(관리운영비) 15. 프로그램원가(직접원가)
III. 영업이익 (영업손실)		OPERATING INCOME (OPERATING LOSS)		
IV.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1) 투자자산처분이익	GAIN ON DISPOSITION OF INVESTMENT ASSETS	투자자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 동 금액 수익처리	7. 자산처분이익(비배분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GAIN ON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유형자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 동 금액 수익처리	7. 자산처분이익(비배분수익)
	(3) 법인세환급액	INCOME TAX REFUND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4) 자산수증이익	GAIN ON ASSETS CONTRIBUTION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	2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비교환수익등)
	(5) 채무면제이익	GAIN ON DEBT EXEMPTION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22. 채무면제이익 (비교환수익 등)
	(6) 보 험 차 익	GAIN ON INSURANCE SETTLEMENT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자산의 장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4. 프로그램수익(기타수익)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7)무역보험기금채권 상환이익	GAIN ON REDEMPTION OF BONDS	무역보험기금채권 상환시 장부금액이 상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8)전기오류수정이익	GAIN ON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전기이전 재무제표의 중대하지 않은 오류수정 이익	9. 기타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 순자산변동표(전기오류수정이익)
	(9)임대사업수익	EARNINGS FROM LEASING	사옥의 임대를 통한 수익	1. 비배분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0) 수수료수익(임차보증금)	COMMISSIONS INCOME (LEASEHOLD DEPOSIT)	임직원 대상 임차보증금 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11) 퇴직연금운용수익	RETIREMENT PENSION OPERATING PRO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6. 이자수익(비배분수익)
	(12) 기타영업외수익	OTHER NON-OPERATING INCOME		9. 기타수익(비배분수익)
V. 영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1) 투자자산처분손실	LOSS ON DISPOSITION OF INVESTMENT ASSETS	투자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 비용처리	18. 자산처분손실(비배분비용)
	(2) 유형자산처분손실	LOSS ON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 비용처리	18. 자산처분손실(비배분비용)
	(3) 법인세추납액	INCOME TAX SUPPLEMENT		20. 기타비용(비배분비용)
	(4) 재 해 손 실	CASUALTY LOSS		20. 기타비용(비배분비용)
	(5)무역보험기금채권 상환손실	LOSS ON REDEMPTION OF BONDS	무역보험기금채권 상환시 상환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	
	(6)전기오류수정손실	LOSS ON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전기이전 재무제표의 중대하지 않은 오류수정 손실	20. 기타비용(비배분비용) 순자산변동표(전기오류수정손실)
	(7) 기타영업외비용	OTHER NON-OPERATING EXPENSES		20. 기타비용(비배분비용)
VI.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VII. 법인세비용		INCOME TAX EXPENSE		20. 기타비용(비배분비용)
VIII. 당기순이익		NET INCOME FOR THE YEAR		